

# 장애인을 위한 성사 거행 지침

(Guidelines for the Celebration of the Sacrament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개정판 — 2017년 6월 15일 미국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승인됨 .

번역 : 한국틴스타

(250325)

교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확고히 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교회 공동체원들의 은사와 필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안에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든 본당 공동체에 장애가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체인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소명을 받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성사의 은총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은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과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은 교회의 성사적 삶에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사 거행에 관한 개정 및 확장된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전 사목 성명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형태의 전례는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그리스도 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 유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당 구성원을 교회 생활의 이러한 기념에서 배제하는 것은, 심지어 수동적인 생략을 통해서라도, 그 공동체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에는 본당 건물의 물리적 변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장애가 있는 신자들이 성찬례와 다른 전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sup>1</sup>



---

<sup>1</sup> 장애인에 관한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목 지침 (1978년 11월, 1989년 개정), 23.

## 들어가며

장애가 있는 신자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사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사 거행과 관련된 사목(pastoral practice)이 교구마다, 심지어 본당마다 크게 다르다고 종종 지적합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와 자막 제공,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교회 시설 접근성, 지적, 발달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리 교육 프로그램의 가용성과 같은 영역에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사목 불일치는 다른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목에 대한 불일치는 종종 서로 다르면서도 겹치는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일부는 장애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교회법의 적절한 적용에 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일부는 두려움, 오해 또는 익숙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밖의 일부는 본당이나 교구의 가용 자원의 실제적 또는 인식된 한계의 결과인 듯 합니다.

이 지침은 장애인과 그 가족, 지지자, 그리고 성직자 및 기타 사목자가 모든 교구의 성사 거행에서 사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한 많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의 영적, 성사적 및 사목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지침은 교회의 예식서, 교회법적 전통,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목한 경험을 활용하여 성사 거행에서 건강한 사목을 하는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지침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교구 정책이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주교들은 *장애인을 위한 성사 거행 지침*을 제시하여 가톨릭 장애인이 완전한 성사 참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공"에 대한 우리의 오랜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sup>2</sup>

이 지침은 사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루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모든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

<sup>2</sup> The *Guidelines* were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e Latin Church. They may be of assistance, however, to all Churches *sui iuris* i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necessary adaptation to reflect the particular traditions, pastoral life, and requirements of the *Code of Canons of the Eastern Churches*. 지침은 라틴 교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모든 자치 교회(Churches *sui iuris*)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방 교회 법전의 특정 전통, 사목 생활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입니다.

치유 메시지와 정의에 대한 부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안에서 교구 직원, 사목회, 교리 교사, 본당 공동체, 의료 종사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신자를 위해 함께 사목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며 이 이침이 숙고의 발판이 되어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1. 기본 원칙

1.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더욱이, 세례를 통해 모든 신자는 동일하게 거룩한 부름을 받습니다.
2. 장애가 있는 신자들은 지역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성사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sup>3</sup>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사목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sup>4</sup>
3.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성사 거행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능력에 따라 완전하고 적극적이며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목자는 장애인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무엇보다도 본당 시설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정책 및 사목의 가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애인이나 그들의 보호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본당의 목표는 완전한 접근성이어야 하며, 이러한 적응은 본당의 전례 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sup>5</sup>
4. 본당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체험의 중심지이므로, 사목자와 사목 협력자들은 본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가 있는 신자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가족과 함께, 기관에서 또는 다른 생활 환경에서 사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본당 신자에게 다가가 환영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목 방문, 본당 인구 조사, 본당 및 교구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소통은 사목 협력자들이 본당의 성사적 삶에 모든 본당 신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

<sup>3</sup> 교회법전 835조, 4항 참조

<sup>4</sup> 교회법전 843조, 1항

<sup>5</sup> See Pope Benedict XVI,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Sacramentum caritatis* (February 22, 2007), 58.(교황권고, 사랑의 성사)

5. 사제는 장애가 있는 본당 신자를 위해 복음화, 교리 교육 및 성사 준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sup>6</sup> 교구는 사제가 이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설립하도록 권장됩니다. 장애인, 그들의 가족 및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을 돌보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당의 교리 교육 및 성사 준비 프로그램은 일부 장애가 있는 신자를 위해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장애인은 일반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기본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특수 교리 교육을 위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sup>7</sup> 그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당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sup>8</sup> 세례를 받은 장애인은 다른 모든 본당 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자격을 갖춘 모든 수준의 사목에 참여하도록 격려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들은 종종 전례 행사, 특히 미사 거행에서 다양한 역할이나 봉사를 수행합니다. 본당 사목회와 구반장들, 전례 봉사자를 포함한 평신도 봉사자들은 본당 공동체에 봉사하는 데 자신의 은사를 나누도록 초대할 때, 자격을 갖춘 장애가 있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환영하는 초대를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sup>9</sup>
7. 완전히 접근 가능한 본당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편의 시설을 넘어 모든 본당 신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포함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장애인을 초대하고 환영하며 포용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합니다. 사목자는 환대하는 본당 문화를 조성하며 주님의 식탁 주변에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기쁘게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사목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구는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필요한 평가 및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

<sup>6</sup> 교회법전 777조, 4

<sup>7</sup> See *National Directory for Catechesis* (NDC) (Washington, DC: USCCB, 2005), 49.

<sup>8</sup> 교회법전 840

<sup>9</sup> See NDC, 49.

## II. 칠성사

### 세례성사

9. 세례성사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결합됩니다. 그들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로 불립니다.<sup>10</sup>

10. 세례가 교회의 신앙과 하느님 백성이 되는 입문의 성사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 세례는 주일에 본당에서, 가능하다면 부활대축일 성야에 거행되어야 합니다.<sup>11</sup>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는 모든 구성원의 세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사가 거행되기 전·후로 공동체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sup>12</sup>

11. 세례는 보편적 구원의 성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아와 스스로 세례를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기를 바랄 이유가 없을 때에만 세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sup>13</sup> 장애 자체는 결코 세례를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의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sup>14</sup> 태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부모는 자녀가 “지체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sup>15</sup> 사실, 사제, 부제 및 기타 사목 협력자는 어려운 태아 진단을 받은 가족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돕고, 자녀가 태어나기 전과 후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자녀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12. 사목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장애가 있는 유아의 부모,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대부모의 기능을 수행할 사람이 세례 성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해

---

<sup>10</sup> See *Christian Initiation*, General Introduction, 1-2; 교회법전 849조 참조.

<sup>11</sup> 교회법전 856-857조 참조.

<sup>12</sup> See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4 and 10.

<sup>13</sup> 교회법전 868조, §1, 2°.

<sup>14</sup> 교회법전, 868조, §1, 1° and 852.

<sup>15</sup> 교회법전 867조 2항

올바르게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목자나 본당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그 가족을 방문하여 새로운 삶의 선물에 기뻐하고 새로운 구성원의 신앙을 키우겠다는 공동체의 지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례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은 여러 가족을 모아 사목 방침과 기도로 공통적으로 형성되고 상호 지원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sup>16</sup>

13. “교리교육 입문은 신자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sup>17</sup> 교리교육 해당 연령의 장애를 지닌 성인과 어린이는 입문 과정의 모든 단계와 전례에 환영받아야 합니다. 교리교육 연령의 예비 신자라면 전례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sup>18</sup> 이런 경우 장애인을 위한 교리교육은 내용과 방법을 장애인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sup>19</sup>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교리교육 연령의 성인과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한 번에 거행해야 합니다.<sup>20</sup>

14. 예비신자(catechumen)는 입문 성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후원자(sponsor)를 선택해야 하며, 예비신자가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동반해주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신자가 세례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안내하고, 새로 세례받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이후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 대부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후원자와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신자는 후원자와 대부모로 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책임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고 형성해야 합니다.<sup>21</sup>

## 견진성사

15.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욱 완벽하게 동화되고 강화되어 “믿음과 사

---

<sup>16</sup> 교회법전 851조, 2°

<sup>17</sup> RCIA, Introduction, 4.

<sup>18</sup> 교회법전. 851조, 1° and 852, §1; see RCIA, 34 and 35.

<sup>19</sup> See NDC, 49.

<sup>20</sup> See *National Statutes for the Catechumenate* (NSC) (Washington, DC: NCCB, 1986), 14.

<sup>21</sup> 교회법전, 872조 and 874.

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sup>22</sup>

16. 부모,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목자, 특히 사목자들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견진성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에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sup>23</sup>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sup>24</sup>

17. 신자들에게는 교구 주교가 정한 범위 내에서 분별력 있는 나이(대략 13세)부터, 또는 사망의 위험이 있거나, 사제가 중대한 사유로 달리 요구할 때 견진을 줘야 합니다.<sup>25</sup>

18.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갖춘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sup>26</sup> 지적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이성의 사용이 어려운 사람도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또는 필요한 경우 부모를 통해 견진성사를 받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사목적 지도와 신앙 공동체 전체의 환영과 포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성사를 준비하고 거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목적 필요에 따라 편의 시설과 더 단순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견진을 받을 사람의 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자는 견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입문의 지속적인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sup>27</sup> 이러한 이유로 세례를 위해 선택된 대부분 중 한 명이 견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sup>28</sup>

20. 이미 다른 종교에서 세례를 받은 장애인이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친교에 받아들여지는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

---

<sup>22</sup> *Order of Confirmation(견진 예식)*, 1-2; 교회법전, 879.

<sup>23</sup> 교회법전, 890.

<sup>24</sup> 교회법전, 885, §1.

<sup>25</sup> Se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Decree implementing canon 891 (August 21, 2001): <https://www.usccb.org/beliefs-and-teachings/what-we-believe/canon-law/complementary-norms/canon-891-age-for-confirmation.cfm>.

<sup>26</sup> 교회법전, 889.

<sup>27</sup> 교회법전, 892조 참조.

<sup>28</sup> 교회법전 893조, §2 참조.

으로 견진성사와 성체성사가 포함됩니다.<sup>29</sup>

## 성체성사

21. 성찬례는 가장 존엄한 성사이며, 그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받아들여지며, 교회가 끊임없이 살아가며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교 전례와 삶의 정점이자 근원이며, 하느님 백성의 일치와 상징하고 실현하며, 수혜자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을 성취합니다.<sup>30</sup> 성체성사 거행은 전체 그리스도교 생활의 중심입니다.

22. 부모나 보호자는 사목자와 함께 이성을 사용할 줄 알게 된 어린이가 올바르게 준비되고 가능한 한 일찍 성체성사 안에서 양식을 받아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목자는 이성의 사용이 어렵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가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sup>31</sup> 그러나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기준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인식이 구두가 아니라 태도, 몸짓 또는 경건한 침묵을 통해 입증되더라도 말입니다.<sup>32</sup> 사목자는 부모,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장애 문제에 관여하는 교구 직원, 심리학자, 종교 교육자 및 기타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본당 신자가 성사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는 신자가 성사를 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성체를 받아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3. 신자들의 삶에서 성체성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장애를 지닌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및 기술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고, 한때 드물었던 상황이 비교적 흔해졌습니다. 성직자와 성체 분배자들은 본당신자들의 필요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간단한 조정이 매우 도움

---

<sup>29</sup> See RCIA, 473-498; see NSC, 35.

<sup>30</sup> 교회법전, 897조 참조.

<sup>31</sup> 교회법전, 914 참조.

<sup>32</sup> 교회법전, 913조, §2; see Pope Benedict XVI,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Sacramentum caritatis* (February 22, 2007), 58.

이 될 수 있으며, 본당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4. 영양 공급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신자들은 모든 신자와 마찬가지로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권장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성사적으로 현존하시며, 성체는 그 형상으로만 받아 모실 수 있습니다.<sup>33</sup> 그리스도의 완전한 현존과 성화은총은 봉헌된 제병의 가장 작은 조각이나 봉헌된 포도주 한 방울에도 존재하므로, 영양 공급 튜브를 사용하여 영양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통해 받는 규범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성체는 영양 공급 튜브를 통해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혈을 한두 방울 혀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직자 및 성체 분배자는 이러한 지침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의사, 가족 및 기타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양 공급 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체의 풍부한 열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성체 분배자를 위한 전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5. 복강병(음식 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장의 질환)이나 글루텐 불내증(글루텐 과민성 장질환)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있는 신자에게는 일반적인 크기보다 작은 제병 조각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저글루텐 제병을 받거나 포도주만 선택적으로 영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글루텐과 포도주 모두에 대한 불내증이 있는 경우, 지역 주교의 승인을 받으면 논-알콜 포도주(mustum)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sup>34</sup> 성직자와 성체 분배자는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신자에게 성체를 안전하게 전해주기 위해 교차 오염 및 관련 문제의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성체 분배에는 제병의 입자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되며, 저글루텐 제병은 일반 제병과 절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눈치가 보일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사목자의 세심한 배려가 특히 중요합니다.

26. 정기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던 세례받은 신자가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연령 관련 치매가 진행되면, 그 사람이 성체와 일반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추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체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사목자는 특별한 인내심을 가지고 사목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삼키는 것이 특히 어려워지면, 성체를 계속 받아 모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목적 결정은

---

<sup>33</sup> 가톨릭교회교리서, 1390항 참조; 교회법전 925조.

<sup>34</sup> Se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Circular Letter to all Presidents of the Episcopal Conferences concerning the use of low-gluten altar breads and mustum as matter for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July 24, 2003), C-1.

개인, 가장 가까운 사람, 의사 및 사목자와 상의하여 사례별로 내려야 합니다.

## 화해성사

27. 고해성사에서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교회와 화해하고, 자선, 모범, 기도로 그들의 회개를 위해 일하는 교회와 화해합니다.<sup>35</sup>

28.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대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조차도 어느 정도 죄스러운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을 종종 의식하고 있으며 죄책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비록 그 죄를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은 성사적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통회조차 경험할 수 없는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나머지 공동체와 함께 참회 예배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29. 말을 할 수 없거나 최소한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개인의 경우, 회개가 말로 표현되지 않고 몸짓으로 표현되더라도 죄에 대한 슬픔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많은 신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후 합병증 및 기타 상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당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신자는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사를 준비하는 개인은 성사를 개인적으로 받는 규범을 허용하기 위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데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이 성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숙지하기 위해 가족과 개인과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다만 고해의 봉인은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질문을 하거나 보속을 줄 때 신중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며, 자신이 동시에 심판자이자 치유자이며, 하느님 자비의 맥락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sup>36</sup>

30. 청각 장애인 신자는 수화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인 경우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사제에게 고백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선택한 승인된 수화 통역사를 통해 고백할 수

---

<sup>35</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11항; 교회법전, 959조.

<sup>36</sup> 교회법전, 978조, §1, 979조, and 981조 참조.

도 있습니다.<sup>37</sup> 통역사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sup>38</sup> 수화 능력을 가진 사제나 수화 통역사가 없는 경우 청각 장애인 신자는 서면으로 고백하거나 고해사제와 참회자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적절한 휴대용 전자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고백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디지털 자료는 참회자에게 반환하고 적절히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31. 고해성사 안에서 성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해성사 밖에서 화해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참회자가 대면 고해성사와 개별 고해성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제가 정해진 고해소에서 고해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어야 합니다.<sup>39</sup>

### 병자성사

32. 교회는 병자 도유를 통해 중병에 걸린 신자들을 고통받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맡겨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sup>40</sup>

33.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과 병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에 처한 신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병자성사로 도움을 받도록 보살펴야 합니다.<sup>41</sup>

34. 장애가 반드시 질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과

---

<sup>37</sup> 교회법전, 990조 참조.

<sup>38</sup> 교회법전, 983조, §2 and 1388조, §2.

<sup>39</sup> 교회법전, 964조 참조; see USCCB, Decree implementing canon 964, §2 (October 20, 2000): <https://www.usccb.org/beliefs-and-teachings/what-we-believe/canon-law/complementary-norms/canon-964-2-the-confessional.cfm>; see Pontifical Council for the Interpretation of Legislative Texts, Response, July 7, 1998: *Acta Apostolicæ Sedis* 90 (1998), 711.

<sup>40</sup> 교회법전, 998조 참조.

<sup>41</sup> 교회법전, 1001조 참조.

동일한 기준과 환경에서 병자성사를 받아야 합니다.<sup>42</sup>

35. 병자 도유는 병자가 성사를 통해 강화될 만큼 충분한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거나,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동안 성사를 요청했을 경우 수여될 수 있습니다.<sup>43</sup> 병자가 이성의 사용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경우일지라도 성사를 줘야 합니다.<sup>44</sup> 병자 도유의 거행에 때때로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은 가장 좋은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sup>45</sup>

## 성품성사

36. 하느님의 제정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성품 성사를 통해 성직자로 선임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직분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위임됩니다.<sup>46</sup>

37. 신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성품에서 실격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품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성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육체적, 인간적, 도덕적, 지성적, 정서적, 심리적 자질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sup>47</sup>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후보자가 교회에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장애가 없는지 판단합니다.<sup>48</sup> 사례는 개별적으로, 사목적 판단과 장애 문제와 관련된 의견은 교구 참사들과 다른 전무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38. 교구 성소국과 장애인국은 서품을 통해 교회를 섬길 성소를 분별하는 장애인 남성에게 상담, 정보 자료 및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39. 서품은 책임 있는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해 교구 주교나 상급 장상은 신학교의 모든

---

<sup>42</sup> 교회법전, 1004조 참조.

<sup>43</sup> See *Pastoral Care of the Sick: Rites of Anointing and Viaticum*, 12 and 14.

<sup>44</sup> 교회법전, 1005조 참조.

<sup>45</sup> 교회법전, 1002조 참조.

<sup>46</sup> 교회법전, 1008조 참조.

<sup>47</sup> 교회법전, 1029조 and 1041조, 1° 참조.

<sup>48</sup> 교회법전, 241조, §1; 1025조, §2; 1029조; and 1051조, 1° 참조.

학생의 양성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양성 담당자는 장애인, 부모, 심리학자, 종교 교육자 및 장애와 관련된 사목자 양성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다른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지침은 신학교의 학업 과정과 성직자의 지속적인 양성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40. 장애가 있는 일부 남성은 이미 주교, 사제 또는 부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성직자는 사목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혼인

41. 혼인성사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와 결실 충만한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고 참여합니다. 그들은 혼인 생활과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 거룩함을 얻도록 서로 돕습니다.<sup>49</sup>

42.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sup>50</sup>

43. 영혼의 사목자는 장애인이 혼인 준비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모든 부부는 거룩함과 새로운 신원의 의무에 대한 소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구 정책을 개발할 때, 지역 교구장은 지적 장애인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 심리적 필요를 이해하는 데 입증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남성과 여성과 협의해야 합니다.<sup>51</sup> 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히 혼인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요와 은사 모두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4. 혼인 생활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부부는 가족 및 사목자와 혼인 성사에 대해 논의하여 상담을 구하도록 권장됩니다. 혼인 동기가 유효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충분한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분별력 부족이 없어야 하며, 혼인 상태의 필수적 의무를 맡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sup>52</sup> 또한 당사자는 혼인이 영구적인 결합이며 배

---

<sup>49</sup> See *Order of Celebrating Matrimony*, 8.

<sup>50</sup> 교회법전, 1058조.

<sup>51</sup> 교회법전, 1063조, 2° and 1064조 참조.

<sup>52</sup> 교회법전, 1095조 참조.

우자의 이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위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sup>53</sup> 사목자와 다른 성직자는 장애 문제와 관련하여 교구 직원, 교회법, 의료 및 기타 전문가와 협의의 바탕으로 사목적 판단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사례를 논해야 합니다.

신체 장애 자체가 반드시 혼인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학적, 정식적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반신 마비가 항상 성교 불능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영구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능 장애에 대한 의심이 드는 중에 혼인을 금할 수 없습니다.<sup>54</sup>

45. 가톨릭 신자들 중 청각 장애인은 수화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일 경우 수화로 혼인 동의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sup>55</sup> 또한 신부가 신뢰성을 증명한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sup>56</sup> 마찬가지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혼인 동의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46. 기혼자를 위한 사목적 돌봄은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돌봄과 모범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는 혼인 상태가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유지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기혼 부부가 가정 내에서 더욱 거룩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당 프로그램에 장애인 신자를 포함시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sup>57</sup>

수명이 길어지면서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연령 관련 치매를 포함하여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신체 또는 정신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배우자와 돌보는 사람이 되는 배우자 모두를 위한 사목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sup>58</sup> 혼인 생활에 대한 헌신을 증언하는 사람은 전체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성인 자녀도 공동체의 지원과

---

<sup>53</sup> 교회법전, 1096조 and 1055조, §1 참조.

<sup>54</sup> 교회법전, 1084조, §2 참조.

<sup>55</sup> 교회법전, 1104조, §2 참조.

<sup>56</sup> 교회법전, 1106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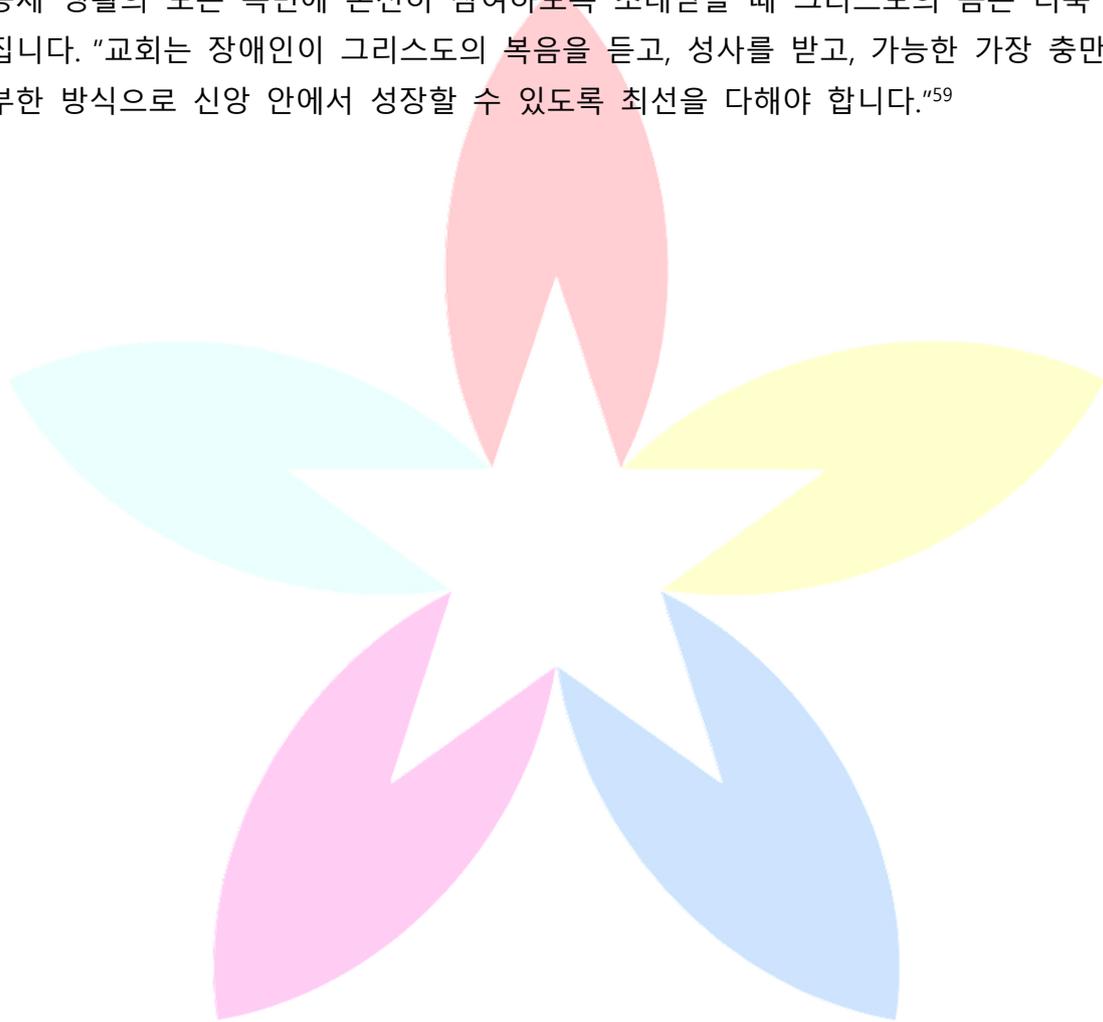
<sup>57</sup> 교회법전, 1063조, 4° 참조.

<sup>58</sup> *Order of Celebrating Matrimony*, 62.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나가며

이 지침은 전례, 사목 및 교리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시됩니다. 모든 장애인은 교회 전체에 기여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아들여지고 환영받으며 본당 공동체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대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완전해집니다. “교회는 장애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사를 받고, 가능한 가장 충만하고 풍부한 방식으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sup>59</sup>



---

<sup>59</sup> NDC, 49.